

「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4년 5월 7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4년 5월 17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4년 5월 17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인재육성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도서관법」 및 「도서관법 시행령」, 「독서문화진흥법」과의 연관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평창군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독서문화진흥 행사 활성화 등을 위한 시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에 따른 내용 정비(안 제4조, 제10조)
-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및 역할 조정(안 제19조)
- 독서진흥 활성화를 위한 내용 정비(안 제2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붙임 1.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.

2.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[붙임 1]

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
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24. 5. 17.)

「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(전문위원 김 영 옥)

「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평창군수 제출
- 제안일자 : 2024. 5. 7.
- 회부일자 : 2024. 5. 17.
- 상정일자 : 2024. 5. 17.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도서관법」 및 「도서관법 시행령」, 「독서문화진흥법」과의 연관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평창군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독서문화진흥 행사 활성화 등을 위한 시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상위법에 따른 내용 정비(안 제4조, 제10조)
-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및 역할 조정(안 제19조)
- 독서진흥 활성화를 위한 내용 정비(안 제25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도서관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지자체의 공립 공공도서관의 인력, 시설, 자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, 「독서문화진흥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지자체의 책무, 행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도 운영상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10조(기증 및 교환 등)에서 도서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를 100분의 7 이내로 변경함.
- 안 제19조(설치·구성)에서는 평창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 자격, 위원장, 간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도 운영상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가 인정되고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규정되었으며 저촉사항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□ **도서관법**

제34조(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)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.

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45조(도서관 인력·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) ③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,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·도서관자료의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·제적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**도서관법 시행령**

제33조(도서관 인력·시설·자료)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7과 같다.

[별표 7]

도서관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(제33조제3항 관련)

2.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

가.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

나. 훼손, 파손 또는 오손

다. 불가항력의 재해·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

라.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(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. 이하 제

4호에서 같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3.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.

□ 독서문화진흥법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제9조(지역의 독서 진흥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제12조(독서의 달 행사 등)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10. 31.>, [시행일: 2024. 5. 1.]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서의 달 설정, 독서 관련 행사, 포상·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독서문화진흥법

제12조(시상)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시상하는 상은 독서문화상으로 한다.

② 독서문화상의 시상은 「정부 표창 규정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□ 정부 표창 규정

제11조(표창의 방법) ③ 표창을 할 때에는 패(牌) 또는 물건·금전 등 부상(副賞)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.

[붙임 2]

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 : 평 창 군 수

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7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5. 7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 「도서관법」 및 「도서관법 시행령」, 「독서문화진흥법」과의 연
관 확보를 위해 내용을 반영하고 평창군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
과 독서문화진흥 행사 활성화를 위한 시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에 따른 내용 정비(안 제10조제4항)
- 나.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및 역할 조정(안 제19조제2항,제3항)
- 다. 독서진흥 활성화를 위한 내용정비(안 제25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서관법」, 「도서관법 시행령」, 「독서문화진흥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 : 2024. 2. 28. ~ 3. 19.결과, 제출된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- 5) 법제심사 : 적정[기획실-4904(2024. 3. 26.)]
- 6)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[기획실-6890(2024. 4. 30.)]

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4항 본문 중 “3 이내로 하되, 해당연도 수집 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”를 “7 이내로 한다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군수”를 “「도서관법」 제34조제2항에 따라 군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0명”을 “8명”으로, “위원장과”를 “위원장은 도서관 소관 부서장이 되고,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도서관담당과 문화·교육·도서관분야”를 “문화·교육·도서관분야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도서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.

제25조제2항 중 “도서문화용품”을 “상품”으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도서관 명칭 및 위치 (제3조제2항 관련)

명 칭	위 치
평창군립대화도서관	대화면 남산2길 27
평창군립봉평도서관	봉평면 기풍4길 10
평창군립진부도서관	진부면 석두로 12-8
평창군립대관령도서관	대관령면 대관령로 83-2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기증 및 교환 등) 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 위는 연간 전체보유 장서의 100 분의 3 이내로 하되, 해당연도 <u>수집 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 과할 수 없다.</u> 다만, 천재지변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에 따 른 분실의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제19조(설치 · 구성) ① <u>군수는 도 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자 문하는 평창군 도서관운영위원 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 다.</u></p> <p>1. ~ 8. (생 략)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한 <u>10명 이상 15명 이하</u>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, <u>위원장과 부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③ 위원은 <u>도서관담당과 문화 · 교육 · 도서관분야의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 전문지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으로</u> 군수가 위</p>	<p>제10조(기증 및 교환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 <u>7 이내로 한다.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9조(설치 · 구성) ① 「<u>도서관 법</u>」 제34조제2항에 따라 <u>군수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 <u>8명</u> ----- ----- <u>위원장은 도서관 소관 부서장이 되고,</u> -----.</p> <p>③ ---- <u>문화 · 교육 · 도서관분 야</u>----- ----- -----</p>

축하되, 특정 성이 전체 위원의
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.

④·⑤ (생략)

제22조(간사 등) ① 위원회의 사
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
두되, 간사는 도서관의 직원 중
에서 정한다.

② (생략)

제25조(표창 등) ① (생략)

②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
한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
기념품 및 독서문화용품, 관련
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-----.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간사 등) ① 위원회의 사
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
도서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5조(표창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상품 -----
-----.

신·구조문대비표(별표 1)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1] 도서관 명칭 및 위치(제3조제2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width: 50%;">명 칭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width: 50%;">위 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평창군립대화도서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화면 남산2길 27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평창군립봉평도서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봉평면 기풍4길 10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평창군립진부도서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진부면 석두로 12-8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명 칭	위 치	평창군립대화도서관	대화면 남산2길 27	평창군립봉평도서관	봉평면 기풍4길 10	평창군립진부도서관	진부면 석두로 12-8	<p>[별표 1] 도서관 명칭 및 위치(제3조제2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width: 50%;">명 칭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width: 50%;">위 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평창군립대화도서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화면 남산2길 27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평창군립봉평도서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봉평면 기풍4길 10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평창군립진부도서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진부면 석두로 12-8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평창군립대관령도서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관령면 대관령로 83-2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명 칭	위 치	평창군립대화도서관	대화면 남산2길 27	평창군립봉평도서관	봉평면 기풍4길 10	평창군립진부도서관	진부면 석두로 12-8	평창군립대관령도서관	대관령면 대관령로 83-2
명 칭	위 치																		
평창군립대화도서관	대화면 남산2길 27																		
평창군립봉평도서관	봉평면 기풍4길 10																		
평창군립진부도서관	진부면 석두로 12-8																		
명 칭	위 치																		
평창군립대화도서관	대화면 남산2길 27																		
평창군립봉평도서관	봉평면 기풍4길 10																		
평창군립진부도서관	진부면 석두로 12-8																		
평창군립대관령도서관	대관령면 대관령로 83-2																		

관계법령 발취

□ **도서관법**[시행 2023. 8. 8.] [법률 제19592호, 2023. 8. 8., 타법개정]

제34조(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) ①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.

②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.

③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**도서관법 시행령**[시행 2023. 9. 12.] [대통령령 제33712호, 2023. 9. 12., 일부개정]

제33조(도서관인력·시설·자료)

③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 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7과 같다.

■ **도서관법 시행령 [별표 7]**

도서관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(제33조제3항 관련)

1.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

- 가.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
- 나.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
- 다.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

2.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

- 가.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
- 나. 훼손, 파손 또는 오손
- 다. 불가항력의 재해·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

라.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(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. 이하 제 4호에서 같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3.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.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.

독서문화진흥법[시행 2023. 5. 4.] [법률 제18857호, 2022. 5. 3., 일부개정]

제12조(독서의 달 행사 등)

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서의 달 설정, 독서 관령 행사, 포상 · 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의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행정지원국 인재육성과장 이현진
연락처	(033) 330 - 2020